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송도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여전히 ‘위탁’으로 표기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여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